

「안산시 청년창업인큐베이팅사업」 2025 안산시 청년큐브 마케팅 지원기업 모집 공고(2차)

안산시 청년창업기업의 판로확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 제고를 위해 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창업기업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5년 7월 3일

안산시장 · (재)경기테크노파크 원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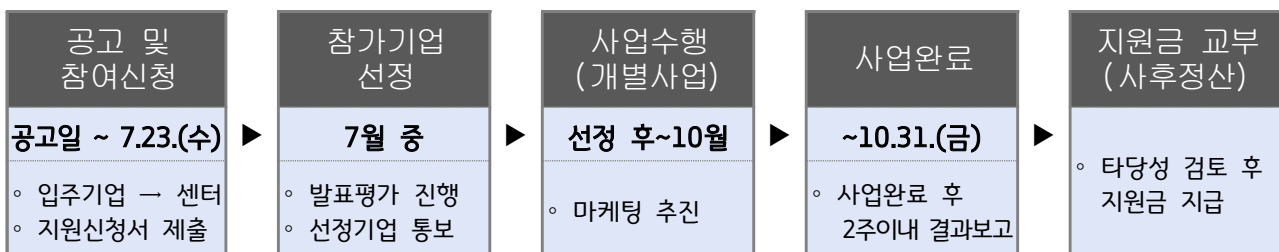
1. 사업개요

- 가. 사업명 : 2025 안산시 청년큐브 홍보 및 마케팅 지원(2차)
- 나. 모집기간 : 공고일 ~ 2025. 7. 23.(수) 18:00까지
- 다. 지원대상 : 공고일 기준 39세 이하인 자로, 사업장소재지(본점)가 안산시이며, 창업 후 3년 미만 이내 기술기반의 창업기업
- 라. 지원규모 : 총 2개사 내외 / 기업 당 최대 5,000천원 이내
- 마. 지원내용

항목	지원내용	지원한도
전시회 참가	- 부스 임차료(항공, 숙박 등 제외) - 기본 장치비(장치물, 부속시설, 조명, 전기, 인터넷 등)	5,000 천원 이내
클라우드펀딩	- 상세 페이지 제작 비용 - 펀딩 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펀딩 플랫폼에서 진행한 광고비	
온/오프라인 홍보물 제작	- 홍보 리플렛, 홍보 웹페이지, 홍보물 디자인, 홍보 동영상 제작 비용 등 (※ 홍보성 기념품 제외)	
홍보 마케팅	- TV·라디오 광고, 신문 광고, 온라인 마케팅 등	
기타 마케팅	- 기타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활동 지원 (※ 전달기관 확인 필요)	

- ※ 기업부담금 없음, VAT(부가가치세) 미지원
- ※ 공고일 이후 개최되는 전시회, 진행 예정인 마케팅 건에 한함

2. 지원절차



- ※ 사업 완료 후 2주 이내 결과보고서와 함께 지원금 신청서류 제출
- ※ 결과보고서 검토(비용집행 적격성 여부, 증빙확인 등) 후 선정기업에게 지원금 개별 지급

3. 신청자격 및 방법

가. 신청자격

- 공고일 기준 39세 이하인 자로, 사업장소재지(본점)가 안산시이며, 창업 후 3년 미만 이내 기술기반의 창업기업
 - 창업기업의 기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을 적용
 - *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(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일),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
 - **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일 경우, 모두 청년에 해당 하여야 함

나. 선정(지원) 제외 대상

- 정부, 타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 등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마케팅 지원을 받은 업체(중복지원 불가)
 - * 세부 지원내용이 다른 경우 타 기관 지원과 무관
- 국세, 지방세 체납업체(신청접수 시 확인)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업종)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거나 신청 제품의 내용이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
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 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
1. 일반유희주점업
2. 무도유희주점업
3.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4.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

- 기타 주관기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다.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~ 2025. 7. 23.(수) 18:00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함
- 신청방법 :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(yyb0626@gtp.or.kr)
 - * 접수 마감일(7.23.) 18:00까지 제출완료 된 건에 대하여 유효함
 - ** 접수완료 후 보완 및 변경 불가능하며, 제외 등 유의사항 확인 필수

라. 제출서류

- ①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신청양식) 각 1부.
-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(신청양식) 1부.
- ③ 중복지원 금지사항 약약서(신청양식) 1부.
-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.
- ⑤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각 1부

구분	목록	
공통서류	- 대표자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 등) * 39세 이하 청년자격 요건 확인용(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)	
사업자별	개인사업자	사업자등록증(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)
제출서류	법인사업자	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
개인사업자		법인사업자
① 대표자 신분증 사본		① 대표자 신분증 사본
② 사업자등록증(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)		② 사업자등록증
		③ 법인등기부등본

*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('25.7.3.) 3개월 이내 발급본 만 인정함

마. 신청시 유의사항

- 접수된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반환 불가하며,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는 접수마감 이후에는 변경 불가
- 제출된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모든 지원혜택이 취소 및 환수됨
- 평가접수 및 평가의견은 공개하지 않으며,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절차는 없음
-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, 신청기업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

4. 선정평가 및 추진일정

가. 추진일정

- 선정규모 : 총 2개사 내외(예산 범위 내 선정)
- 평가절차 : 요건검토 및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

나. 평가방법

- (요건검토) :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등 적정성 검토
- (발표평가) : '기업/제품 경쟁력', '마케팅 계획', '기대효과', '일반평가'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발표평가 후 선정평가표 합산 고득점순으로 최종선정

* 발표평가는 대표자가 참석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다. 평가지표

-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에서 ‘기업/제품 경쟁력’, ‘마케팅 계획’, ‘기대효과’, ‘일반평가’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

항목	배점	평가내용
합계	100	
일반평가	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기업의 전문성, 기술성 및 역량 등 ◦ 기업 역량, 전문성, 특화 분야 등
마케팅 계획	3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마케팅 추진 계획의 타당성 ◦ 소요비용의 적정성 등
기업/제품경쟁력	3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지식재산권, 신기술 및 품질마크 인증여부 등 ◦ 대상제품 특성, 활용분야, 기술성, 마케팅 전략 등
기대효과	3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기업매출 등에 미치는 가시적 성과 창출 가능성

※ 동점 발생 시 ‘기업/제품 경쟁력’, ‘마케팅 계획’, ‘기대효과’, ‘일반평가’ 항목순으로 고득점자에 우선순위 부여

5. 기타사항

가. 선정자의 의무

-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사업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
- 선정자는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요청하는 자료제출, 점검 및 평가, 컨설팅 참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기업은 사업추진 후 사업의 성과분석 등을 위해 사후관리에 필요한 설문조사 및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나. 유의사항

-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, 지침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타인의 아이디어,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
- 기업별 마케팅 계획은 임의 변경이 불가하며, 사업계획 변경 또는 사업기간 연장 희망 시 사업종료 14일 전까지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
- 본 유의사항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